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25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201068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25158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상원

피 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공주희, 한승진

2. D

피고(선정당사자)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권오천, 구태형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A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D는 같은 등기소 2017. 1. 18. 접수 제5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선정자 F, G, H, I, J, K, L는 같은 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1196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다.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1196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C은,

1)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3851/220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D는 같은 등기소 2017. 1. 18. 접수 제5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선정자 F, G, H, I, J, K, L는 같은 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1196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1196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C은,

1)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3851/220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11. 12. 접수 제62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N(1973. 7. 26. 사망하였다)과 혼인하여 자녀로 장남인 피고 C, 장녀인 O, 차녀인 원고 A, 삼녀인 원고 B를 두었다.

나.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전부 1975. 11. 4. 매매를 원인으로 1975. 11. 12.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2. 7.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1. 18. 접수 제5174호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9. 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119687호로 선정자

F, G, H, I, J, K, L(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9. 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119686호로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7702/11008 지분과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은 현재 피고 C의 소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폐쇄된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양주시 P 답 2,933㎡(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는 2020. 6. 3. 그중 P 답 225㎡가 Q에, P 답 338㎡가 R에

각 분할 이기됨에 따라 면적이 2,370㎡로 감소되었다가, 2020. 8. 3. 대지로 지목변경된 후 S 대 3,728㎡에 합병 이기됨에 따라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폐쇄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75. 10. 18. 사망하였는데, 피고 C은 망인에 대하여 허위로 1975. 11. 29.자 사망신고를 하고, 망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5. 11. 4. 매매를 원인으로 1975. 11. 12.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무효인 피고 C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이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 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제적등본에 망인이 1975. 11. 29. 사망하여 동거하는 친족인 피고 C이 같은 해 12. 7. 사망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위 제적등본 기재와 같이 망인은 1975. 11. 29.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갑 제12 내지 16,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C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은 매년 음력 9. 13. 망인의 제사를 함께 지내왔고, 망인의 친인척도 망인이 1975. 10. 18.에 사망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일에 관한 제적등본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제사일, 친인척이 기억하는 망인의 사망일이 망인에 대한 제적등본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적등본상 사망일 기재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마쳐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기주, 판사 김성래, 판사 심용아

선 정 자 명 단

- 1. F
- 2. G
- 3. H
- 4. I
- 5. J
- 6. K
- 7. L
- 8. E

별지

1. 경기도 남양주시 T 공장용지 503㎡
2. 경기도 남양주시 U 공장용지 479㎡
3. 경기도 남양주시 V 공장용지 620㎡
4. 경기도 남양주시 W 도로 45㎡
5. 경기도 남양주시 X 도로 5㎡
6. 경기도 남양주시 Y 공장용지 1490㎡
7. 경기도 남양주시 Z 도로 146㎡
8. 경기도 남양주시 P 답 2933㎡
9. 경기도 남양주시 AA 답 11,008㎡
10. 경기도 남양주시 AB 답 2,027㎡, 끝.

